

답변서

사건번호 : 2016재누293

[담당재판부: 제6행정부]

재심원고(원고) 임그루

우편번호 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재심피고(피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0414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피고보조) (주)KT 대표이사 황창규

우편번호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내용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유 없이 주장과 증거 묵살한 것은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많은 판사님들이 그렇게 한 것은 협력한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1.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항변도 부인도 없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다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를 지켜주세요.

2. 청와대 민원 했습니다. 총 11장(뒷면첨부)

노스쿨출신 판사님들에게 재판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맺 음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중대한 오류가 법률에 정해진 재심사유에 해당되어 법률에 정해진 재심절차에 의하여 권리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률이 정해진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장과 증거 묵살했으며, 2013재누148부터는 변론 없이 계속적으로 각하 판결합니다. 이번에도 변론 없이 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판결 선고기일 변경해주셔서 정상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해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3월 일

원고: 임 그 루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